복부의 신경원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다발성 종양절제술 시 주의의무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 종양에 대한 절제술 후 원고에게 하지 불완전 마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46113 판결).

원고는 2013년경 타원에서 척추 내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양측 복부에도 종양이 진단되었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7. 5.경 위 복부 종양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상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 종양이 확인되고, 신경초종이나 신경섬유종 같은 다발성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어 원고에게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좌측 후복막에 존재하는 종양은 7×5cm 크기로 신경말이집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여 쉽게 분리되었으나, 우측 골반에 존재하는 종양은 외장골 혈관과 내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혈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크기도 10×5cm로 컸으며 추골공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어 보호자에게 이러한 수술소견과 종양절제술시 신경손상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함을 설명하고 2개의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였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는 양쪽 하지에 통증평가지수 10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였다. 현재까지 원고는 양쪽 하지의 감각저하 및 운동저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7. 12. 22. 진단 결과 양측 요·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하지 불완전 마비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경초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므로 신경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일부만 절제하거나 예후를 경과 관찰하여 추후에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신경초종을 완전히 절제하여 신경손상

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고, 미세수술요법을 사용하여 운동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였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종양의 악성유무를 확인한 후 수술 범위나 수술 방향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완전절제를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양을 적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경압박이 발생할 가능성과 향후 악성으로 변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고, 종양의 크기 및 위치상 미세수술요법은 부적절하며, 미세수술요법으로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 신경 유착 정도에 따라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세수술요법으로 신경초종 절제술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경원성 종양의 악성 여부는 수술 후 조직검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 수술 시 주의의무위반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미세수술요법 시행 필요성과 관련하여 수인의 감정의 사이에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세수술요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미세수술요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바,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수술방법 선택과 관련하여 의사의 재량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병원 측 소송수행 시 감정결과 일부 불리한 회신이 있더라도 보다 유리한 회신을 한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관련 논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의료인의 재량 범위 내의 치료방법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익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mhong@lkpartner.co.kr